

|      |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|
| 등록번호 | 건강관리과-9055 |
| 등록일자 | 2016.5.19. |
| 결재일자 | 2016.5.20. |
| 공개구분 | 대시민공개      |

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
| 주무관    | 지역보건팀장 | 건강관리과장 | 보건소장         |
| 김소운    | 심은지    | 신용준    | 05/20<br>홍혜정 |
| 편<br>조 |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|

## 2016년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지원 계획



보 건 소  
건강관리과

# 2016년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확대 지원 계획

출산 가정의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고위험 임신부 및 다자녀 가정, 취약계층 가정 등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개선,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자 함.

## I 추진 근거

-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, 제9조, 제10조, 제32조
-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- 2016년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(보건복지부)
- 2016년 지원대상의 자율적 범위 확대(보건복지부)

## II 추진 배경

- 산후조리 형태의 변화에 따라 건강한 임신·출산·양육을 보장하는 출산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함.
- 출산정책 관련 행정서비스 모니터링 수행결과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확대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.
- 국가 추진부서인 보건복지부에서 예외지원 확대 권장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예정

III

## 추진 현황

- 연도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및 확대지원 현황  
(단위 : 명)

| 연도    | 2013 | 2014 | 2015 | 비고(예산)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0세인구  | 929  | 919  | 842  |                     |
| 기본 지원 | 86   | 98   | 106  | 국 50%, 시 25%, 구 25% |
| 확대 지원 | 34   | 33   | 12   | 구비 100%             |

IV

## 사업 개요

- 기본 지원사업

- 기본지원대상 :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

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
- 예외지원대상: 소득기준과 예외지원 해당자 모두 충족한 대상
  -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
  - 예외지원 해당자

-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①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    | ⑤ 새터민 산모  |
| ②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| ⑥ 결혼이민 산모 |
| ③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   | ⑦ 미혼모 산모  |
| ④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   |           |

- 확대 지원사업

- 지원대상

- 셋째아 이상일 경우 소득 관계없이 지원
- 둘째아 이상일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

- 지원금액 : 예외지원(라형)과 동일

※단, 기본 및 확대지원 모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

- 사업기간 : 2016년 1월 ~ 12월
- 지원내용 :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표준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이용권(Voucher) 지급

□ 바우처 지원기간

| 구분              | 제공기간 | 제공일 수 |
|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|
| 단태아             | 2주   | 10일   |
| 쌍태아             | 3주   | 15일   |
| 삼태아 이상, 중증장애 산모 | 4주   | 20일   |

V

## 서비스 대상자 선정

□ 지원기준

| 구분               | 서비스 가격 상한선 | 소득구간 (기준중위소득) | 유형   | 바우처 지원액    | 본인 부담금            | 서비스 제공기간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
| 단태아              | 860,000    | 50%이하         | A-가형 | 600,000원   | 서비스 가격과 정부 지원금 차액 | 10일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50%초과~60%이하   | A-나형 | 570,000원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60%초과~80%이하   | A-다형 | 520,000원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80%초과(예외지원)   | A-라형 | 450,000원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쌍생아              | 1,500,000  | 50%이하         | B-가형 | 1,098,000원 |                   | 서비스 가격과 정부 지원금 차액 | 15일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50%초과~60%이하   | B-나형 | 1,035,000원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60%초과~80%이하   | B-다형 | 936,000원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80%초과(예외지원)   | B-라형 | 810,000원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삼태아 이상, 중증장애인 산모 | 2,200,000  | 50%이하         | C-가형 | 1,620,000원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서비스 가격과 정부 지원금 차액 | 20일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50%초과~60%이하   | C-나형 | 1,530,000원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60%초과~80%이하   | C-다형 | 1,400,000원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| 80%초과(예외지원)   | C-라형 | 1,200,000원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|

※ 중증장애인 : 1, 2급 장애등급 및 장애등급을 2개이상 받은 자 중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3급인자

## □ 기준중위소득 100% 판정기준

| 가구원 수 | 소득기준     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 |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      |           | 직장가입자          | 지역가입자   | 혼합(직장+지역) |
| 1인    | 1,625,000 | 50,145         | 29,117  | 50,632    |
| 2인    | 2,767,000 | 85,556         | 85,848  | 86,328    |
| 3인    | 3,579,000 | 109,916        | 121,260 | 111,270   |
| 4인    | 4,391,000 | 135,514        | 151,923 | 137,491   |
| 5인    | 5,204,000 | 161,332        | 179,719 | 163,997   |
| 6인    | 6,016,000 | 184,638        | 204,479 | 188,050   |
| 7인    | 6,829,000 | 213,802        | 235,598 | 219,775   |
| 8인    | 7,641,000 | 234,118        | 254,736 | 242,453   |
| 9인    | 8,454,000 | 261,486        | 281,163 | 273,128   |
| 10인   | 9,266,000 | 286,652        | 306,016 | 302,654   |

※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

## □ 기준중위소득 120% 판정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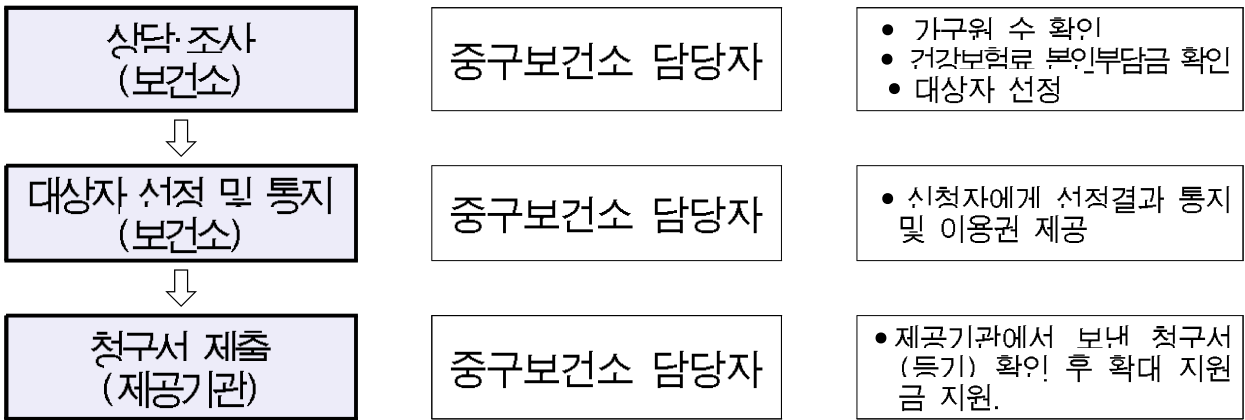
| 가구원 수 | 소득기준      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 |         |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      |            | 직장가입자          | 지역가입자   | 혼합(직장+지역) |
| 1인    | 1,950,000  | 59,713         | 43,266  | 60,479    |
| 2인    | 3,320,000  | 102,614        | 110,808 | 103,865   |
| 3인    | 4,295,000  | 131,616        | 147,770 | 133,559   |
| 4인    | 5,270,000  | 161,332        | 179,719 | 163,997   |
| 5인    | 6,245,000  | 191,626        | 212,123 | 195,451   |
| 6인    | 7,220,000  | 226,744        | 247,830 | 234,118   |
| 7인    | 8,194,000  | 251,447        | 271,204 | 261,486   |
| 8인    | 9,169,000  | 286,652        | 306,016 | 302,654   |
| 9인    | 10,144,000 | 324,566        | 342,813 | 350,430   |
| 10인   | 11,119,000 | 350,430        | 361,855 | 376,045   |

※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

## □ 추진절차

| 구 분              | 주 체      | 내 용 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
| 신청 및 접수<br>(보건소) | 본인·가구원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서</li> <li>제출서류(확인 서류 등)</li> </ul> |





## □ 신청방법

- 지원 신청 : 산모 본인 및 가족
- 신청 장소 : 중구보건소
- 신청 기간 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
- 제출 서류
  - 신청서 1부
  - 건강보험증 사본 1부
  -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(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) 1부
  - 출산(예정) 증빙서류(의사소견서 또는 산모수첩, 출생증명서 등)1부
  - 소득수준 외 지원대상자는 해당 증빙서류
    - 둘째아 이상 ⇒ 주민등록등본 1부  
(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제출 생략)
    - 희귀난치질환자 ⇒ 질병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
    - 장애인 ⇒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

## VI 소 요 예 산

### □ 예산 : 22,000천원(구비100%)

- 산출기초 :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22,000천원
- 예산과목 : 건강관리과, 국민의 건강수준 향상,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, 산모신생아도우미확대지원, 민간이전, 민간위탁금

- 보건복지부 「2016년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및 서울시 2016년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지원 계획안을 근거」로 추진
- 기타 지침 및 방침에 준하지 않는 예기치 못한 민원의 경우 자체 서류 검토 후 지원 결정
- 자치구 홈페이지, 반상회보, 관내 산후조리원 등을 통한 시민홍보. 끝.